

VII

기업집단 규제정책 지주회사 제도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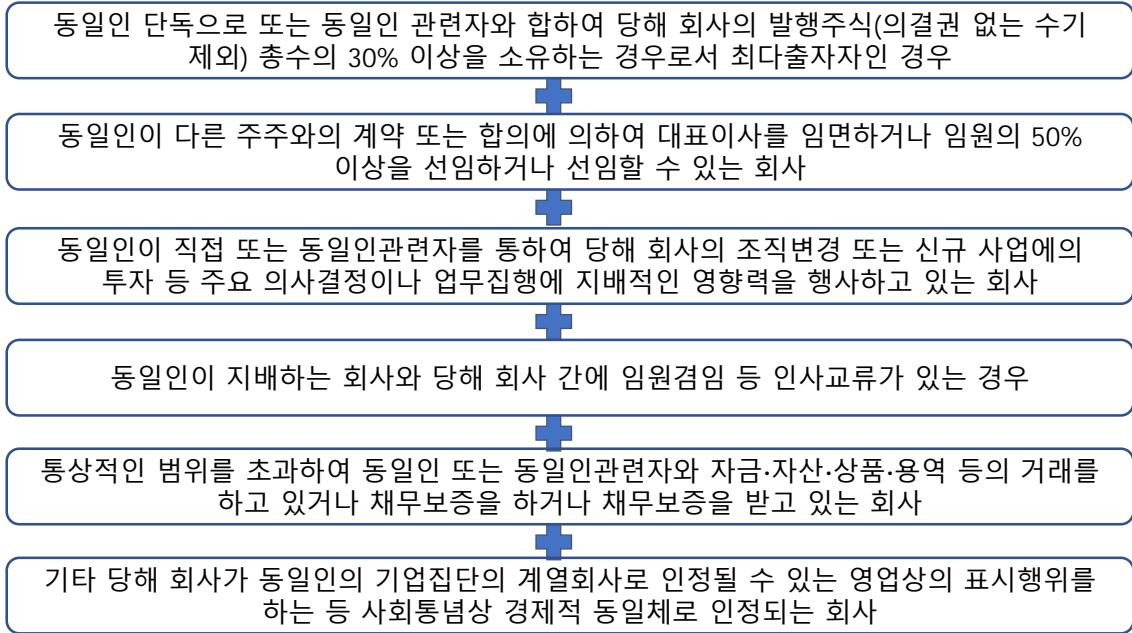
1. 기업집단 규제정책 개요

1.1 기업집단 지정제도

① 기업집단

- 동일인(사람 또는 회사)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② 기업집단 범위



※ 동일인 관련자 :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및 단체, 임원 등

③ 기업집단 규제정책의 적용

-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및 시장경쟁 저해 방지 등 공정 시장경쟁 조성을 위해 매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및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지정하여 의무 및 규제를 적용

④ 기업집단 신고 등 의무사항

구분	내용
기업집단 지정 등 자료제출 (법 제 31조)	◆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적용대상 확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에 관련자료(일반현황, 재무 등) 제출
계열회사 편입 및 제외 신고 (법 제32조)	◆ 기업집단 지정 이후 계열회사 편입/제외 변동 발생시, 기업집단 시책 적용대상 변동을 위한 신고

기업결합 신고 (법 제11조)	◆ M&A 등의 기업결합은 사전에 신고하여 공정위가 시장경쟁 제한성을 심사하며 승인시에만 기업결합 가능
공시제도 (법 제26조~29조)	◆ 기업의 이해관계자(주주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주요사항을 공시

⑤ 기업집단 신고 등 규제사항

구분	내용
상호출자 금지 (법 제21조)	◆ 실질적인 출자없이 계열회사 확대 방지를 위해 2개의 계열회사가 상호간 주식을 보유하는 출자행위 금지
순환출자 금지 (법 제22조)	◆ 계열회사 부실에 따른 연쇄적인 악순환 방지를 위해 3개 이상의 계열회사가 상호 연결된 출자고리 형성 금지
채무보증 금지 (법 제24조)	◆ 계열회사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회사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채무보증 금지
부당지원행위 금지 (법 제45조)	◆ 계열회사 및 공익법인 등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되도록 자금, 자산, 상품·용역 등을 거래하는 행위 금지

1.2 기업집단 지정 등 자료 제출

구분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자료 제출
작성 대상	◆ 기업집단내 소속회사 및 비영리 법인	
제출 시기	◆ 1차: 3월 (주총 전 중간결산 자료 기준) ◆ 2차: 4월 (결산 주총 완료 후, 최종 자료 기준)	◆ 정기: 5월 ◆ 비정기: 계열편입 시 편입 통지 이후 (편입 회사)
제출 자료	◆ [대표회사] 동일인 및 친족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 [소속회사] 회사 현황(재무, 임원, 주주 등), 내부지분율, 비계열사 주식보유 현황(15% 이상) 등	◆ [대표회사] 지배구조 현황(지분도) ◆ [소속회사] 주식소유 현황, 채무보증 현황, 확인서 등
공정위 활동	◆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적용대상 확정 (5월) ◆ 계열편입 위반사항 점검	◆ 주식 및 채무보증 현황 발표 ◆ 기업집단내 출자규제 및 채무보증 현황 점검
위반시 제재	◆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에 따라 경고~고발 (동일인) ◆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벌칙: 1억원 이하 벌금

1.3 계열회사 편입 및 제외 신고

지분율 또는 지배력 요건 충족 시 계열회사로 편입하고, 계열제외 요건 해당 시 계열제외 신고 (공정위 심사 후 결과 접수)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대상 변동 적용

구분	계열편입	계열제외
지분율 요건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30% 이상(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이며, 최다 출자자	◆ 계열편입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회사 ◆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지배력 요건	◆ 동일인이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① 임원 선임: 대표이사 임면 또는 등기 임원 50% 이상 (선임권 보유 포함) ②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③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지배하는 회사와 임원겸임 ◆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거래 또는 채무 보증 관계 ◆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 인정되는 회사	① 출자자간 합의/계약 등에 따라 동일인관련자* 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②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친족독립경영) ③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임원독립경영) ④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써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회사 i. 사업구조조정을 위해 현물출자 또는 합병 등에 의한 방법으로 설립된 회사 ii. 민투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법인 ⑤ 파산 또는 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 등
공정위 활동	◆ 위장 계열사 등 계열편입/제외 수사 조사	
위반시 제재	◆ 과태료: 사업자-1억원 이하 / 임직원 등 개인-1천만원 이하 ◆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편입 허위 또는 누락으로 추가 제재 Risk 존재함	

※ 동일인 관련자* :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및 단체, 임원 등

1.4 기업결합 규제 및 신고

기업결합이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이 자본적·인적·조직적인 결합을 통하여 공통의 지배력 하에 통합되는 것을 말하며, 공정거래법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기업결합으로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다만,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라고 하더라도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보다 크거나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구분	내용
신고 기준	◆ 기준1: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 신고회사: 3,000억원 이상 -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 -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일 경우, 기업집단 전체의 자산 또는 매출액 합계하여 산정 - 외국회사의 경우, 국내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기준2: 거래금액 - 거래금액(인수 채무합계 포함) ≥ 6,000억원

신고 예외	◆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회사의 설립 or 주식 20% 이상 (상장사 15%) 취득 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①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②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회사 ③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신고 유형	구분	내용	계열사간 결합 시	신고시기	
	주식 취득	① 발행주식 20%(상장사 15%) 이상 취득 ② 추가 주식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X	사전	계약 또는 주총의결일 등 이후, 기업결합일 이전
	합병	타사와 신설·흡수·분할합병 하는 경우	0 (간이신고)		
	영업 양수	① 타사의 영업 양수/임차 ② 경영의 수임 ③ 타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양수	0 (간이신고)		
	회사설립 참여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X (PFV의 경우 0)	사후	선임의결일 30일 이내
임원겸임	대규모회사의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	X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1/3미만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0)			
공정위 활동	◆ 기업결합 신고위반 또는 미심사 기업결합 수사 조사				
위반시 제재	◆ 과태료: 사업자-1억원 이하 / 임직원 등 개인-1천만원 이하				

Q&A

Q1. 계열회사 판단에 대한 공정위 실무 기준

A1.

- ① 지분율 관련 요건 : i)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자의 계열회사로 판단 (예외적으로 지배력 요건이 지분율 요건을 충분히 상쇄할 경우에만 계열회사로 미판단), ii) 50% 최다출자자가 2인(A,B)일 경우, A와 B의 공동의 지배 인정 가능(나머지 지배력 크기도 동일할 경우)
- ② 지배력 관련 요건 : i) 임원 선임 권한, 임원 구성, 정관이나 협약서 상 주주간 의사결정 절차·방법, 권리·의무 관계 등에 비추어 누가 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검토, ii) 기타 인사이동, 자금대차, 채무보증, 거래현황 등도 부가적인 기준으로 삼음
- ③ 기타 고려 요소 : i) 기타 해당 회사의 법인격, 설립 목적 및 경위, 타법령 적용대상 여부, 주무관청 존재 여부, 주주간 구성 및 분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열회사 여부를 판단, ii) 현재 시점의 지배력 뿐 아니라 향후 장래의 지배력까지 살펴보아야 하므로 종합적, 다각도로 검토

Q2. 공동투자 법인 관련 계열회사 판단 기준

A2.

- ① 동일인 측이 최다출자자인 경우
 - i) 원칙 : 계열회사로 편입
 - ii) 예외 : 출자자간 합의, 계약에 의해 비동일인 측이 경영을 지배함이 명백할 경우 제외 인정 (편입 후 제외)
- ② 동일인 측과 비동일인 측이 공동 최다 출자자인 경우
 - i) 원칙 : 양 측이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 계열편입
 - ii) 예외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동일인 측으로 미편입
 - ① 정관 또는 합작계약서 등에 의해 비동일인 측이 이사의 과반수와 대표이사 (공동 대표 포함)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및 이사를 선임 하였을 것
 - ② 최소한 감사 1인을 비동일인 측이 선임 하였을 것
 - ③ 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자금 대차나 채무 보증 등이 없을 것
- ③ 비동일인 측이 최다 출자자인 경우
 - i) 원칙 :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미편입 또는 제외
 - ii) 예외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열편입 또는 제외 불인정
 - ① 동일인 측이 임원(감사 포함)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
 - ② 동일인 측이 가장 많은 이사를 선임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
 - ③ 양 측이 동일한 수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 측이 대표이사 (공동대표포함)를 선임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
 - ④ 기타 정관, 합작계약서, 임원구성 현황,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관계 등을 종합 감안 할 때, 동일인 측이 당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Q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관련 계열판단 기준

A3.

-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인 경우
 - i) 원칙 : 무한책임사원(GP) 측 계열회사로 판단
 - ii) 예외 : 특정 유한책임사원(LP) 측이 GP와 함께 공동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LP 측 계열회사로 공동 편입 (예를 들어 LP 1인이 거의 100% 지분을 갖고 단독으로 정관 변경, GP 해임 등 주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출자한 회사
 - i) PEF가 투자한 피투자회사의 경우, 일반적인 계열판단 기준 (지분율 요건 및 지배력 요건)에 따라 판단
 - ii) 자본시장법 개정('21.4.20)으로 변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체계 중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기준 적용 가능

Q4. 계열회사에서 "회사"는 상법상 회사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A4. 원칙적으로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를 의미하지만, 실질상 영리행위를 하는 법인인 경우 회사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이 핵심개념)

- i)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ii) 상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 iii) 민법 제39조(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Q5. 계열회사 요건 충족 시, 투자신탁(펀드)의 경우에도 계열회사에 해당하나요?

A5. 투자신탁(펀드)은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추상적인 자산 집합체로서, 법인격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계열 "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6. 동일인관련자와 특수관계인이 동일한 개념인가요?

A6. 동일인관련자와 특수관계인은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긴 하나, 공정거래법상 정의 규정에 따르면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란 ①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자, ②동일인관련자, ③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7. 친족독립경영 또는 임원독립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친족 또는 임원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나요?

A7.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측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는 한편, 해당 친족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임원독립경영의 경우 해당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측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나 해당 임원은 임원 지위를 유지하는 한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Q8. 지분율 요건을 불충족하면 계열회사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

A8. 기업집단의 범위(계열회사 여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혹은 제2호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분율 요건(시행령 제4조 제1호)을 불충족하더라도 지배력 요건(시행령 제4조 제2호)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에 해당합니다.

한편,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 해당되며 지배력 요건이 지분율 요건을 충분히 상쇄할 경우에만 계열회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Q9. 각각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여 있는 A사와 B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공동GP로 출자하고 있는 아래의 상황에서 해당 PEF는 A사의 계열회사로 볼 수 있나요?

- 출자비율: A사의 출자비율은 25%, B사의 출자비율은 30%
- 임원현황: 투자심의위원 총 5인 중 A사가 2인 선임, B사가 3인 선임
- 정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은 구성위원 5인 중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투자에 대한 최종의사결정, GP가 부의하는 안건, 1억원 이상 계약체결 승인 등 수행

A9. PEF의 경우 업무집행사원(GP)를 PEF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자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정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PEF는 A사가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A사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A사는 최종·핵심의사결정 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 5인 중 2인만 선임하고 3인은 B사가 선임하는 점, 투자심의위원회 모든 결정은 위원 5명 중 3명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져 A사는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다만, 이 경우에도 이후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정관 내용 변경 등에 따라 A사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해당 PEF는 계열회사 편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2.1 상호출자의 개념

- 2개 이상의 독립된 회사가 서로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2.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공정거래법 개정 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법 제31조 제1항]

✓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1.12.30) 이후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한다고 발표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 [부칙 제4조] → ‘24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
기업집단 DL은 개정 전 기준에 따라 ‘23. 5.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

2.3 상호출자의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됨 [법 제21조 제1항(본문)]
-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탈법행위는 금지됨 [법 제36조, 시행령 제42조]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제3호)
 - ② 자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제4호)

▶ 예외 [법 제21조 제1항(단서)·제2항]

-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
-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 단, 그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처분: 회사의 합병 등으로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 주식을 다른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출자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312 판결)

2.4 순환출자의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계열 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22조 제1항(본문 전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국내 계열회사는 계열출자대상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22조 제1항(본문 후단)]
-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탈법행위는 금지됨 [법 제36조, 시행령 제42조]
 - 자기가 취득·소유하면 계열출자 또는 추가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취득·소유하도록 하고, 그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제5호)
 - 자기가 취득·소유하면 계열출자 또는 추가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제6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 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법 제24조]

▶ 예외 (1) [법 제22조 제1항(본문 괄호)]

- 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 (이하 "신주배정등")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을 범위의 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 간 합병에 따른 계열출자는 제외 [법 제22조 제1항(본문 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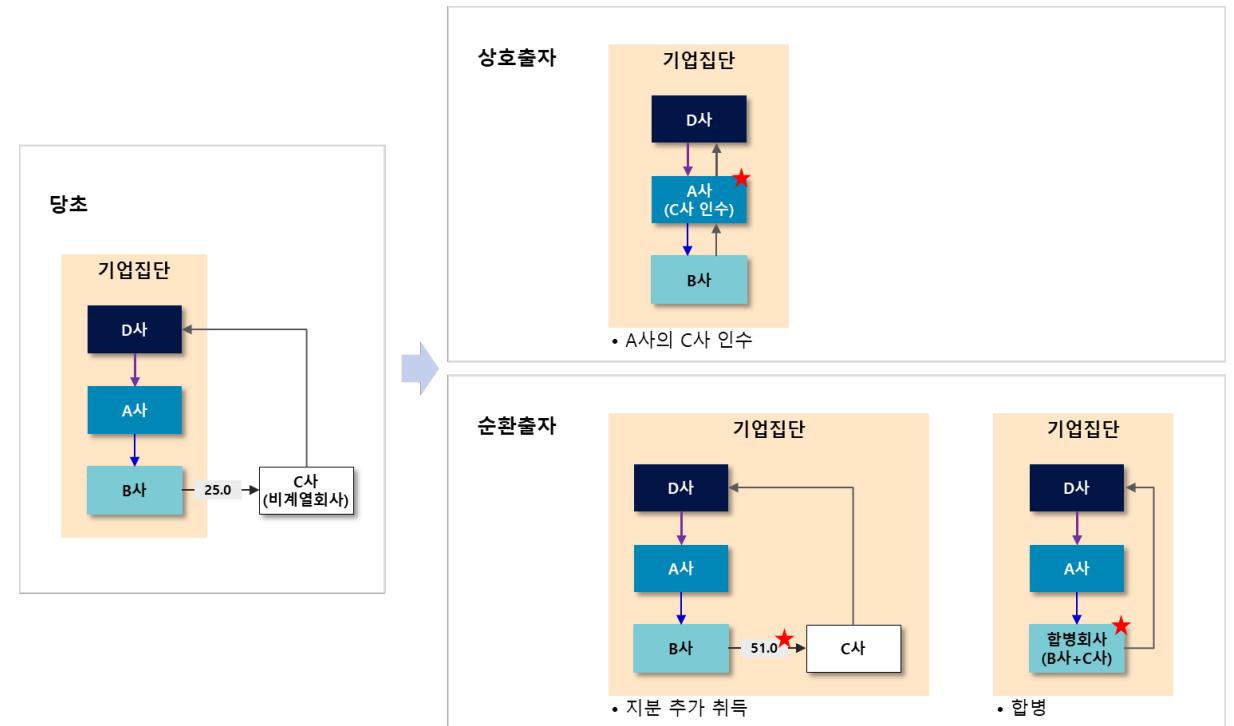
▶ 예외 (2) [법 제22조 제1항(단서)·제2항]

-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제1호)
-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제2호)
- 계열출자회사가 신주배정등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다른 주주의 실권 등에 따라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을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출자 대상 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제3호)
-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제1호, 제2호) 또는 1년(제3호)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야 함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제1항에 따른 계열출자로 형성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2.5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법 제37조 제1항):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제2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제6호) 등
- 시정조치의 이행 확보(법 제39조)
 - 시정조치 부과받은 날부터 법 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불가(제1항)
 -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불가(제2항)
- 과징금(법 제38조 제1항) : 주식 취득가액의 20% 이내에서 부과 가능
- 벌칙(법 제124조 제1항 제7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2.6 상호/순환출자 유의사례



3.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3.1 채무보증의 개념

- 채무보증 :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 [법 제2조 제18호]
※ 여신 :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법 제2조 제19호]

3.2 채무보증의 금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24조(본문)]
- 채무보증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탈법행위는 금지됨 [법 제36조, 시행령 제42조]
 - ①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제1호 : 병존적 채무인수)
 - ②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다른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제2호 : 교차 채무보증)

▶ 예외 [법 제24조(단서) 제1호·제2호, 시행령 제31조]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 ① 주식양도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 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 :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하는 보증
 - ②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 인수하는 회사의 계열회사가 하는 보증
-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 ①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본재나 그 밖의 상품의 생산과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 ②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사업, 수출선박의 건조 사업, 용역수출 사업, 그 밖에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수금환급보증·유보금환급보증·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 ③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 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 ④ 인수인도조건수출 어음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 금융기관 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 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 ⑦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에 국내 금융기관이 해당 계열회사에 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⑧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한 보증을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해 하는 재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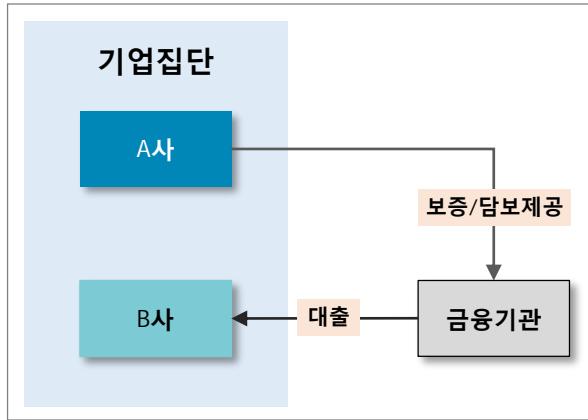
3.3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법 제37조 제1항] : 채무보증의 취소(제5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제6호) 등
- 과징금 [법 제38조 제2항] : 채무보증액의 20% 과징금 부과 가능
- 벌칙 [법 제124조 제1항 제8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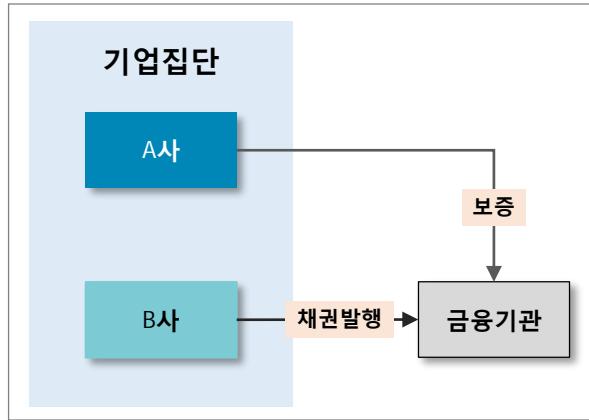
3.4 채무보증 유의사례

▶ 채무보증 금지

1. 직접 보증 (또는 연대 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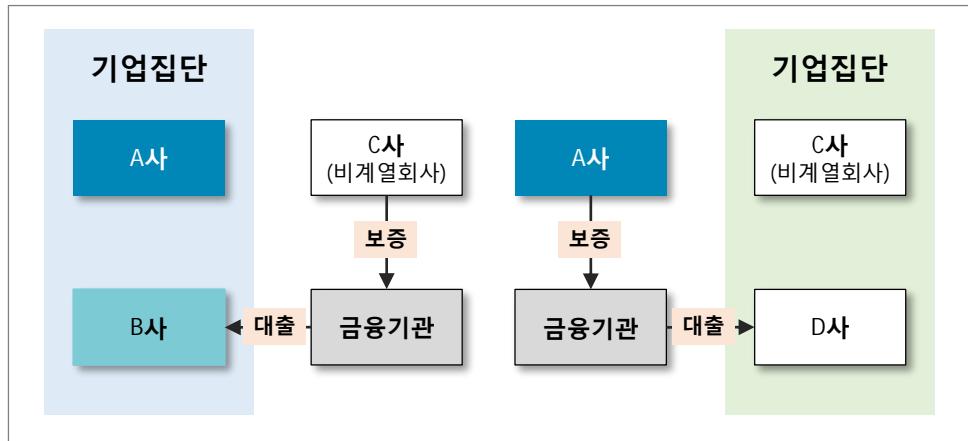


2. 사모사채 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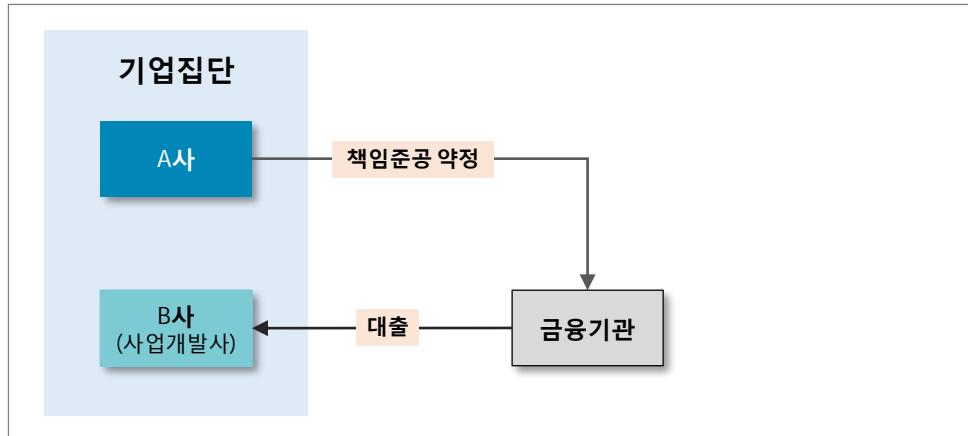


▶ 유사 채무보증 우려

• 교차 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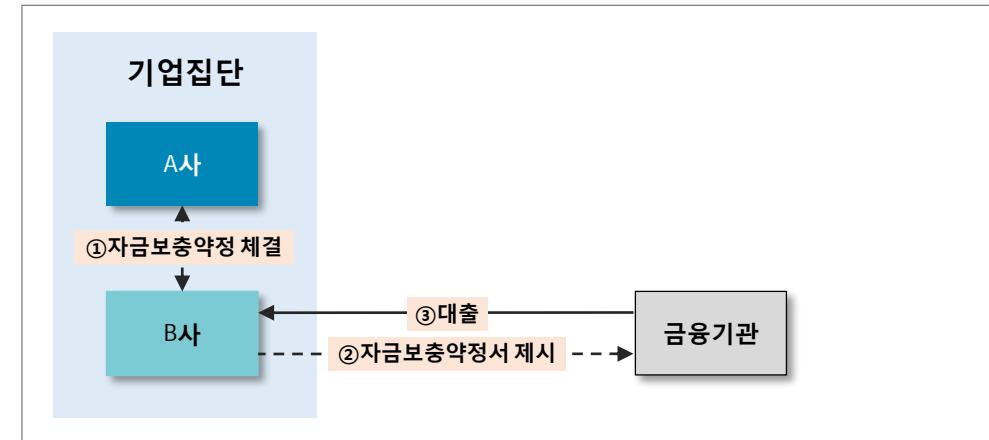


•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한 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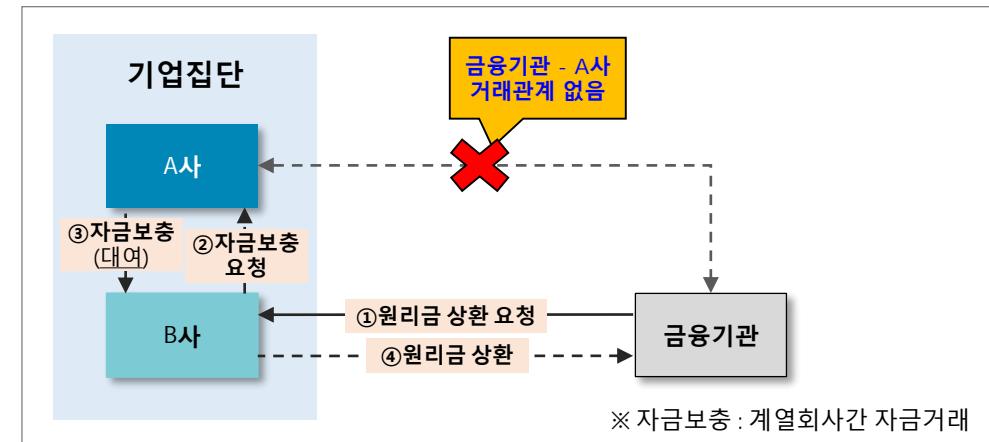


▶ 자금보증 약정

• 약정 체결



• 약정 실행 : B사 자금 부족 시



▶ 채무보증 vs 자금보증약정 비교

구분	채무보증	자금보증약정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책임	A사	B사
A사 - 금융기관 거래	O	X (내부거래)
A사의 대가수취	X	O (대여이자)

☞ 참고.

공정위 의결서 2014집단0171 (2014.11.13)
대한시스템즈(주)의 채무보증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주)티씨엔알이 4개 상호저축은행(한국상호저축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 경기상호저축은행, 영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8. 6. 10.부터 2008. 6. 29.까지 제공받은 대출금 140억원, 2008. 6. 30.부터 2011. 6. 30.까지 제공받은 대출금 280억원, 2011. 7. 1.부터 2012. 4. 17.까지 제공받은 대출금 266억원

1) 설립시 회사명은 '삼양금융 주식회사'이었으나, 2010. 7. 9.에 '주식회사 티씨엔알'로, 2012. 6. 7.에 '대한시스템즈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
2) 피심인은 2012. 4. 18. 한국상호저축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 경기상호저축은행, 영남상호저축은행과 채무보증 대신 자금보증약정(채무자의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할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차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증해 주는 약정으로 채무보증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체결함으로써 채무보증을 종료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감 제11호중 및 소감 제12호중)

4. 기업결합

4.1 기업결합의 제한

- 회사는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9조 제1항 본문]

▶ 제한되는 대상 행위 (Caution)

※ 아래의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행위를 통해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것임.
따라서 당사와 같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법에서 정한 기준(상대방 회사의 자산총액·매출액, 거래발생 금액 등)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공정위에 신고를 통해 심사를 요청하고 승인 이후 기업결합을 진행하여야 함.

-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를 통한 경쟁 제한
-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을 통한 경쟁 제한
-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경쟁 제한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입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를 통한 경쟁 제한
-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를 통한 경쟁 제한
- 제외대상 :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와 동일인관련자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않거나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 따른 분할에 따른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예외 (1) [법 제9조 제1항 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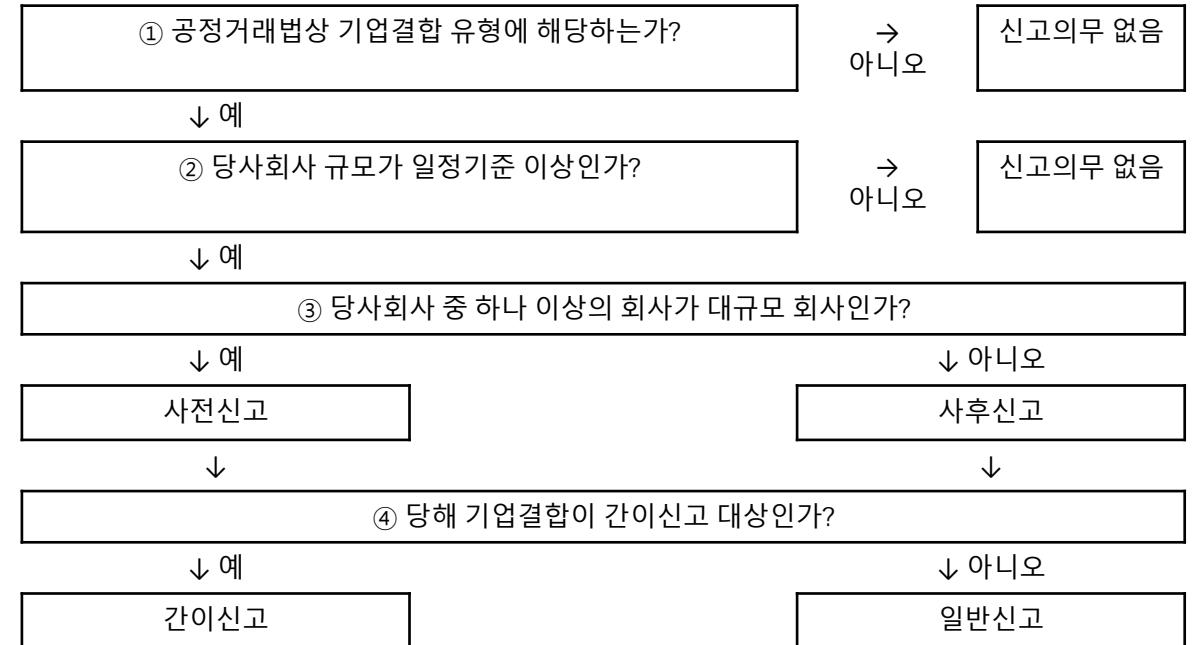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외의 자가 임원겸임에 의한 기업결합 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9조 제1항 단서]

▶ 예외 (2) [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 기업결합심사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사업자가 입증하여 공정위가 인정하는 경우
 - 해당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 상당한 기간 동안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 생산설비 등이 해당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렵고
 - 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4위 이하 사업자이거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100 미만인 경우

4.2 기업결합 신고의무

❖ 기업결합 신고 절차 흐름도



※ 당사회사 규모가 일정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㉞ 기업결합 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이고, ㉟ 상대회사가 국내에서 상당한 수준(예: 월간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용역 판매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사전·일반신고" 를 하여야 함

4.2.1 기업결합 유형

① 주식취득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의 20% (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20% (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② 임원겸임

- 대규모회사(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가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

③ 합병

- 다른 회사와 신설·흡수·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④ 영업양수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양수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임차
- 경영의 수입
-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⑤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4.2.2 회사 규모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회사
- 상대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다른 회사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 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그 외국회사 각각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내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대상
- 대규모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 소규모피취득회사: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4.2.3 신고대상 행위

▶ [법 제11조 제1항]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에 대하여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의 신고대상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신고대상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의 신고대상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신고대상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법 제11조 제2항]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 ①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하여 주식취득, 임원겸임, 영업양수의 신고대상 기업결합 또는,
 - ②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신고대상 기업결합을 할 때로서,
 - ㉠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것을 포함)이 6천억 원 이상이고,
 - ㉡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
 ※ 상당한 수준 [시행령 제19조 제2항]
 - ㉢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거나,
 - ㉣ 직전 3년간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활용해 왔고, 국내 연구시설, 연구 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

4.2.4 예외

▶ [법 제11조 제3항]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의 주식을 20% (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또는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 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을 20% (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ii)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또는 그러한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 iii)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20% (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그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 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 [법 제11조 제4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미리 해당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

4.2.5 신고절차

- 신고시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한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필요한 경우 90일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구분	당사 회사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전 신고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계약일 등 이후 기업결합일 이전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주식대금납입기일 까지
사후 신고	대규모회사 외의 자	주식취득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합병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영업양수	영업양수대금 지불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사신설 참여	주식대금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대규모회사	임원겸임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임의적 사전심사

-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는 신고기간 전이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필요한 경우 90일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간이신고

- 기업결합 신고의무자와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특수관계인(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다만,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승인받은 결합을 정식으로 신고하는 경우(다만, 사실관계나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외)

4.3 위반 시 제재

① 시정조치 [법 제14조 제1항,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 제한대상 기업결합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유형	내용
구조적 조치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나 소유구조를 변경시키는 시정조치 ① 금지조치: 해당 기업결합 전체를 발생할 수 없게 하거나 이미 발생한 기업결합을 원상회복시키는 조치 ② 자산매각조치: 결합 당사회사의 자산을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 ③ 지식재산권 조치: 결합당사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 또는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
형태적 조치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영업조건, 영업방식, 영업범위 또는 내부경영활동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시정조치

② 이행강제금 [법 제16조]

- 시정조치를 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 가능

기업결합 유형	이행강제금 부과 범위	
주식취득 회사설립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각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
합병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영업양수	영업양수금액	
임원겸임	1일당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	

③ 기업결합 완료행위의 금지 [법 제11조 제8항]

-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후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기업 결합 완료행위(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주식인수행위) 금지

④ 설립무효의 소 제기 [법 제14조 제2항]

- 제한대상 기업결합행위 또는 심사결과 통지 전 기업결합 완료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⑤ 과태료 [법 제130조 제1항 제1호]

-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의 신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4 임원 겸임에 따른 유의사항

4.4.1 계열편입

- 원칙적으로 임원 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열편입 신고하지 않음 (단, 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을 통해 현황 점검)

타사	당사(그룹)	신고대상
30%이상 최다출자자	등기임원(이사/감사)	0
대표이사	등기임원(이사/감사)	0
등기임원 (이사/감사)	등기임원(이사/감사)	X
	임원측 겸임 임원 합하여 과반 이상	0

4.4.2 계열제외

임원독립경영 요건 모두 충족 시, 자동 계열제외 (미충족시 계열편입 신고)

- 임원 선임 이전부터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일 것
- 기업집단내 계열회사와 상호간 출자하고 있지 않을 것
- 기업집단내 계열회사와 독립경영임원 외에 상호 겸임이 없을 것
- 기업집단내 계열회사와 채무보증 또는 자금대차가 없을 것
- 기업집단내 계열회사와 총매출/매입 거래액이 50% 미만일 것 (직전사업연도 거래금액 기준)

4.4.3 기업결합 (타사 임원이 당사 등기임원 선임 시)

- 신고내용 : 매출(or 자산총액) 2조원 이상 회사(or 그룹) 임원이 당사 임원 겸임
- 신고의무 : 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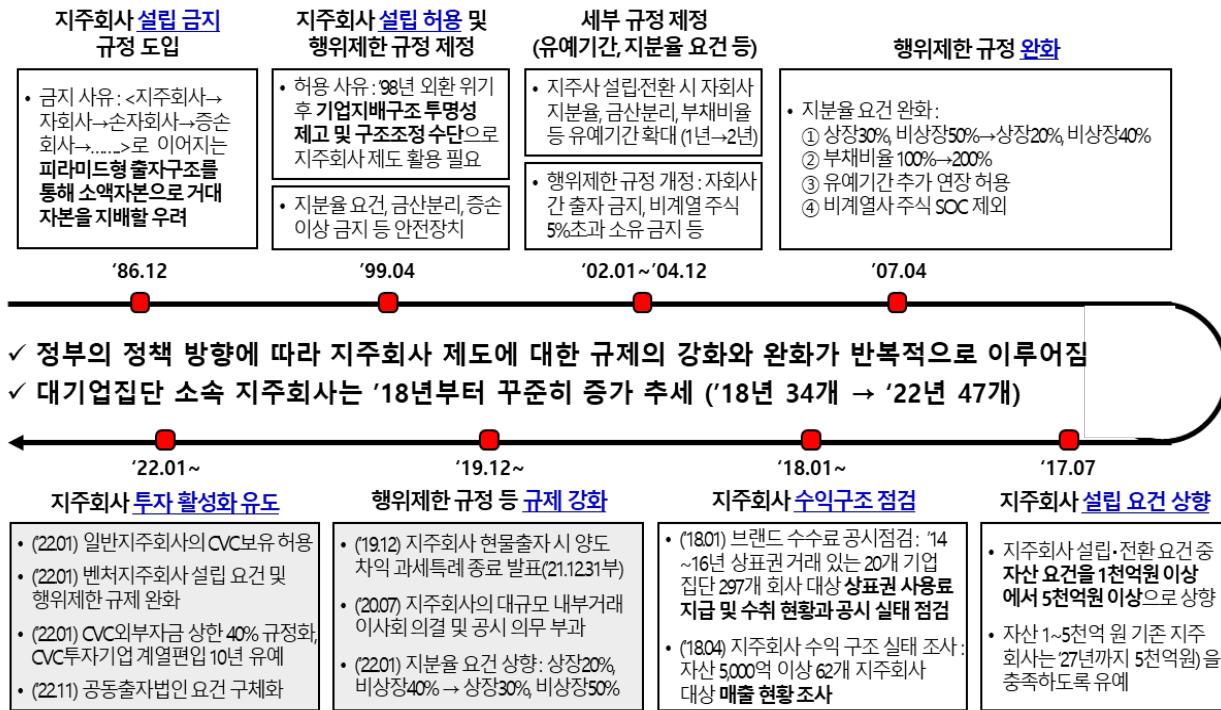
타사	당사(그룹)	신고대상
사내/기타비상무 이사, 감사	사내/사외/기타비상무 이사, 감사	0
사외이사	사내/기타비상무 이사, 감사	0
	사외이사	X

4.4.4 기업결합 (당사 임원이 타사 등기임원에 선임될 시)

- 신고내용 : 당사 임원이 매출(or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회사(or 그룹) 임원 겸임
- 신고의무 : 당사

당사(그룹)	타사	신고대상
사내/기타비상무 이사, 감사	사내/사외/기타비상무 이사, 감사	0
사외이사	사내/기타비상무 이사, 감사	0
	사외이사	X

5. 지주회사 제도



5.1 요건 및 정의

5.1.1 지주회사

-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주된 사업이란? :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 [법 제2조 제7호]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회사 [시행령 제3조, 제1~2항]

5.1.2 자회사

- 지주회사에 의해 그 사업내용을 지배 받는 국내회사로써 [법 제2조 제8호]
 -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이며,
 -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지주회사가 소유한 주식의 다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보다 같거나 많을 것 [시행령 제3조 제3항]

5.1.3 손자회사

- 자회사에 의해 그 사업내용을 지배 받는 국내회사로써 [법 제2조 제9호]
 - 자회사의 계열회사이며,
 - 해당 손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가 소유한 주식의 다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보다 같거나 많을 것 [시행령 제3조 제4항]

5.1.4 증손회사

- 손자회사에 의해 그 사업내용을 지배 받는 국내회사로써
 - 손자회사의 계열회사이며,
 - 해당 증손회사에 대하여 손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시행령 제3조 제5항]

5.2 지주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의무

5.2.1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구분	내용 (법 제17조, 시행령 제26조)
의무사항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일정한 기한 내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의 현황을 공정위에 신고
신고기한	① 지주회사의 설립·분할·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②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 산정기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내용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 등

5.2.2 지주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구분	내용 (법 제18조 제7항, 시행령 제29조)
의무사항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주식소유현황·재무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
제출기한	4월말 (12월말 결산법인 기준) * 3월말 결산법인은 7월말까지
보고내용	지주회사 등의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기타	사업내용 보고서를 기초로 매년 지주회사 현황을 공개 (10~11월)

5.2.3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

구분	내용 (시행령 제26조 제4~5항)
의무사항	소유주식 감소, 자산증감 등의 사유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될 경우 공정위에 신고
신고기한	신고기한 없음 - 지주회사 적용제외 시점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며 공정위는 신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적용제외 여부 통지

5.3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5.3.1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구분	내용
부채비율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 ☞ 타인자본 조달을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 방지 목적
비계열사	비계열사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 금지 ☞ 비계열사로의 지배력 확장 방지, 자회사 관리 집중 목적 ☞ 단, '비계열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 투자 활성화 목적
자회사	자회사 지분을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 자회사는 30%) 미만으로 소유 금지 ☞ 과도한 지배력 확장 방지 목적
다른 계열사	자회사 이외의 다른 국내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 유지 목적
금산분리	일반지주회사(비금융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소유 금지 ☞ 금산분리 목적

5.3.2 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구분	내용
손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을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 자회사는 30%) 미만으로 소유 금지
다른 계열사	손자회사 이외의 다른 국내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금산분리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 금지

5.3.3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구분	내용
계열회사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단, 손자회사가 100% 주식 소유하는 증손회사 예외)

5.3.4 증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구분	내용
계열회사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예외 없음)

5.3.5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에 대한 유예기간

구분	행위제한 요건	유예기간 (아래 Case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 내 해소해야 함)
지주회사	1 『부채비율 200% 이내 유지』	▪ 지주회사 전환 시 요건 미충족 2년
	2 『자회사 주식 50% 이상 소유』 ▪ (예외) 상장, 공동출자법인: 30% 이상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시행되는 '22.1월 이후 신규 편입하는 자회사 50%이상 소유 (상장/공동출자법인 30%이상) - '21.12월까지 보유한 자회사는 40%이상 소유 가능	▪ 지주회사 전환 시 요건 미충족 2년 ▪ 상장 폐지 또는 공동출자법인 이었다가 아니게 된 경우 ▪ 타 주주의 전환사채 전환 청구 or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주식 보유 기준 미달 ▪ 자회사 아닌 회사(비계열사, 체계외계열사, 손자/증손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미달 [최종적으로 자회사로 반드시 편입한 경우로 한정] ▪ 자회사를 자회사가 아닌 회사(비계열사, 체계외계열사, 손자/증손회사)로 제외하는 과정에서 미달 [최종적으로 자회사에서 반드시 제외한 경우로 한정] ▪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으로 인해 미달 등 1년
	3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소유 금지』 ▪ (예외1)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 (예외2) 지주회사가 보유한 비계열사 주식 가액 합계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 대비 15% 미만인 경우	▪ 지주회사 전환 시 요건 미충족 2년 ▪ 계열사 또는 비계열사(5% 초과소유)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자회사로 반드시 편입한 경우에만 한정] ▪ 자회사를 자회사가 아닌 회사(비계열사, 체계외계열사, 손자/증손회사 등)로 제외하는 과정에서 미달 1년
	4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 지주회사 전환 시 요건 미충족 2년
	5 『금융/보험업종 국내회사 주식 소유 금지』	▪ 지주회사 전환 시 요건 미충족 2년
자회사	1 『손자회사 주식 50% 이상 소유』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시행되는 '22.1월 이후 신규 편입하는 손자회사 50%이상 소유 (상장/공동출자법인 30%이상) - '21.12월까지 보유한 손자회사는 40%이상 소유 가능	▪ 자회사가 될 당시 요건 미충족 2년 ▪ 상장 폐지 또는 공동출자법인 이었다가 아니게 된 경우 ▪ 타주주의 전환사채 전환 청구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주식보유 기준 미달 ▪ 손자회사 아닌 회사(비계열사, 체계외계열사, he자/he손자/증손회사)를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미달 [최종적으로 손자회사로 반드시 편입한 경우 한정] ▪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서 제외(비계열사, 체계외계열사, he자/he손자/증손회사)하는 과정에서 미달 [최종적으로 손자회사에서 반드시 제외한 경우 한정] ▪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으로 인해 미달 1년
	2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 자회사가 될 당시 요건 미충족 2년
	3 『비계열사 주식 소유 가능』	▪ 계열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손자회사로 반드시 편입한 경우에만 한정] ▪ 손자회사를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로 제외하는 과정에서 미달 ▪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다른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자기주식 보유한 자회사가 분할로 인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1년
손자회사	4 『금융/보험업종 손자회사 소유 금지』	▪ 자회사가 될 당시 요건 미충족 2년
	1 『증손회사 주식 100% 소유』	▪ 손자회사가 될 당시 요건 미충족 2년
	2 『증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 손자회사가 주식을 보유한 비계열사가 계열사로 편입된 경우 1년
	3 『비계열사 주식 소유 가능』	▪ 자기주식을 보유한 손자회사가 분할로 인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1년
증손회사	4 『금융/보험업종 증손회사 소유 금지』	▪ 증손회사가 될 당시 요건 미충족 2년
	1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 증손회사가 될 당시 요건 미충족 2년
증손회사	2 『비계열사 주식 소유 가능』	▪ 증손회사가 주식 보유한 비계열사가 계열사로 편입된 경우 1년

5.4 위반시 제재

5.4.1 지주회사 신고 및 보고 의무 위반 [법 제126조]

- 벌칙 :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자,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양벌가능)

5.4.2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법 제37, 38, 124조]

- 시정조치 : 행위 중지, 주식 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법 위반상태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과징금 : 위반행위별로 산정되는 위반금액에 대하여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 벌칙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양벌가능)

5.4.3 과징금 부과 기준

구분	위반사항	과징금 산정 위한 위반금액 (A)	과징금 산정 절차
지주회사	▪ 부채비율 200% 초과	▪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① 1차 조정금액 - 위반금액, 기간 등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산정 - 위반금액×20% (max)
	▪ 자회사 주식 50% (상장 30%) 미만 소유	▪ (대차대조표 상 자회사 장부가액 × 기준 미달 비율) / 현재 보유 비율	
	▪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소유 ▪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소유 ▪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	▪ 대차대조표 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비계열사 주식 초과 보유액, 자회사 외 계열사/금융보험사 주식 보유액)	
자회사	▪ 손자회사 주식 50% (상장 30%) 미만 소유	▪ (대차대조표 상 자회사 장부가액 × 기준 미달 비율) / 현재 보유 비율	② 2차 조정금액 (가중/감경) - 위반 횟수 가중 80% (max) - 조사협력, 자진시정 감경 30% (max)
	▪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소유 ▪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	▪ 대차대조표 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손자회사	▪ 증손회사 외 계열사 주식 소유	▪ 대차대조표 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증손회사	▪ 계열사 주식 소유	▪ 대차대조표 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5.4.4 법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A사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 ㉠ 위반 유형 :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위반
- ㉡ 위반 내용
 1. A사는 '18.11. B사의 지분 30%를 취득 → 당시에는 B사의 대표이사인 허○○ 및 이○○이 각각 B사의 지분 35%를 보유한 최다출자자였기에 계열회사가 아니었음.
 2. A사는 '19.05. C사의 지분 70%를 인수하여 C사는 A사의 계열회사 및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C사의 사내이사였던 허○○, 이○○은 A사의 동일인관련자가 되어, 같은 날 허○○과 이○○이 최다출자자인 B사도 A사의 계열회사가 됨.
 3. 즉, B사의 최다출자자인 허○○과 이○○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C사가 A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19.05. 부터 B사는 A사의 계열회사에 해당되어, **A사는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음.**
- ㉢ 유의사항 : 외부 주주(회사)가 최다출자자인 비계열사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해당 외부 주주(회사)가 DL 그룹의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행위제한 위반에 해당됨.

D사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 ㉠ 위반 유형 :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위반
- ㉡ 위반 내용
 1. D사가 소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비계열회사 E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다출자자였던 윤○○가 '14.03.부터 D사의 자회사인 F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지배력에 의한 계열회사 편입으로 F사는 D사의 계열회사가 되어, **D사는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음**
- ㉢ 유의사항 : 외부 주주(개인)가 최다출자자인 비계열사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해당 외부 주주가 DL 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비계열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행위제한 위반에 해당됨.

H사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 ㉠ 위반 유형 :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위반
- ㉡ 위반 내용
 1. H사는 지주회사 체계 내 손자회사로 편입된 '13.12 이후, '17.12. 부터 '19.06. 까지 특수목적법인인 I사의 주식을 80% 소유하여, H사는 **증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음**
- ㉢ 유의사항 : 손자회사가 된 이후, 신규설립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지 않는 경우 즉시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됨.

J사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 위반 유형 : 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주식소유 금지 위반

㉡ 위반 내용

1. J사는 '16.08. 지주회사 전환 이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K사의 주식을 '19.06. 취득하여 '20.02. 까지 약 8개월간 소유하여, K사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 회사의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음.**

㉢ 유의사항 : 지주회사 전환 이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1주라도 소유하는 경우 즉시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됨.

L사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 위반 유형 :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위반

㉡ 위반 내용

1. L사는 '15.12. 지주회사 전환 이후, '15.07. 증손단계 계열회사였던 M사를 합병하게 되어 기존에 M사가 소유하고 있던 지주체계 외 계열사인 N사의 주식을 3.2% 소유하여,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의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음.**

㉢ 유의사항 : 계열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 지분을 소수 보유하고 있던 경우 →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행위제한 위반에 해당됨.

㉣ 비고 : 지배구조 개편 등으로 인한 합병/분할 시 행위제한 규정 위반 발생에 대한 주의 필요

Q&A

Q1.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도 계열회사에 해당되나요?

A1. 네.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 회사의 계열회사이므로 출자구조의 형태(수직, 혹은 수평 등)와 관련없이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도 모두 서로의 계열회사에 해당됩니다.

계열회사 개념이 가장 포괄적이고 지주회사 체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Q2. 다른 계열회사와 투자하여 신규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A2. 가능할 수 있지만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고려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신규 법인이 비계열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하며, 계열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 체계 내 회사와 공동 투자는 불가하고, 지주회사 체계 외 (대림 등) 회사와는 공동투자가 가능하나 반드시 최다출자자가 되어 신규 법인을 자회사로 두어야 합니다.

Q3. 신규 법인에 투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꼭 50%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 하나요?

A3. 2021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면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당사는 자회사 설립 시 지분을 40%에서 50%로 상향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출자법인이나 상장회사의 경우 30%이상 소유가 가능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50% 이상 취득이 어려울 경우 1년 이내 유예기간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CP담당부서와 세부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시 제도

6.1 공시제도 개관

구분	내용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회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책임 강화, 사외이사들의 견제 유도, 공시를 통한 이해관계인 감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 ◆ 대규모 내부거래의 유형(공정거래법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자금 ②유가증권 ③자산 ④상품,용역
기업집단현황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거래현황 등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이해관계인에 의한 시장감시장치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 기업은 스스로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하여 투명한 경영을 실천함 ◆ 기업집단현황공시 세부 내용(공정거래법 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회사현황 ②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③주식소유현황 ④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⑤순환출자현황 ⑥지주회사현황 ⑦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비상장사 수시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하는 제도 ◆ 비상장사 수시공시 적용대상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 ②특수관계인(동일인 및 친족)이 단독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20%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50%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계열회사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는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시 대상 해당 ◆ 비상장사 수시공시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소유지배구조 ②재무구조 ③경영활동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토록 하여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지급수단 ②지급금액 ③지급기간 ④분쟁조정기구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공시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상반기,하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기간 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매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 공시

공정위 공시 위반에 따른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 제 130조(과태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4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9에 따라 위반 유형별 과태료 차등 부과 ◆ 공시 유형별 과태료 부과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500만원 ~ 7,000만원 ②기업집단현황 공시 : 100만원 ~ 1,000만원 ③비상장사 수시공시 : 100만원 ~ 1,000만원 ④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 100만원 ~ 500만원
------------------------	---

Q&A

Q1. 공시와 공정위 자료 제출의 차이점

A1. 공시는 회사의 경영 결정사항 및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그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이사회/주주총회의 결정사항 또는 분기별 회사의 현황을 일정 기한내 전자공시 시스템에 등재해야 함.

반면, 공정위 자료제출은 기업집단의 공정거래법 규제정책 준수 여부 점검을 목적으로 하고, 공정위가 해당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임.

Q2. 정해진 내용 없이 추진사항(타법인 주식 취득, 자산 처분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받은 경우 공시방법

▶ 이사회 결의한 내용을 기한 내 공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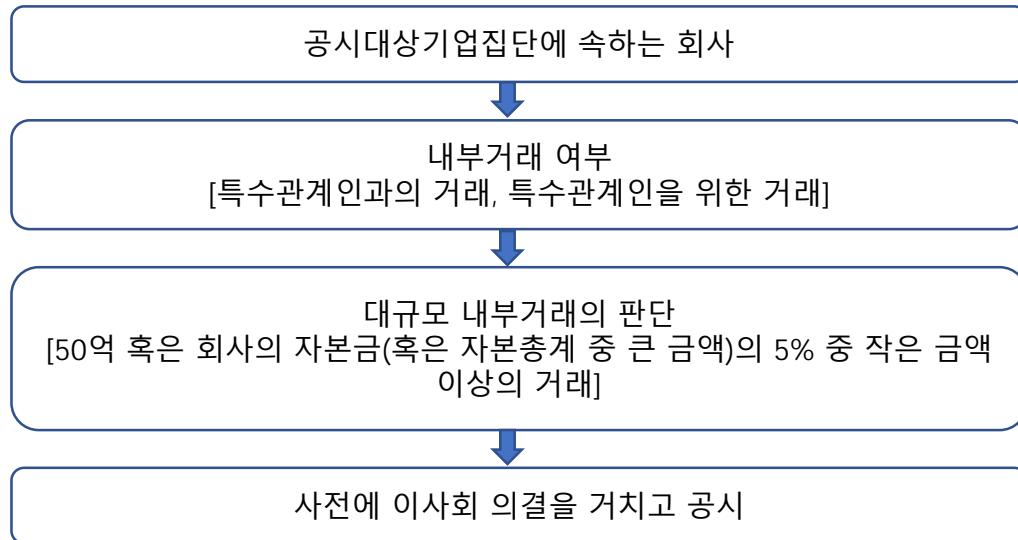
단, 공시양식 중 '미정 또는 현 시점 확인불가'한 내용은 추후 확정/결정 시 정정공시 예정임을 기재하고, 이후 그 확정/결정사항을 정정공시해야 함.

6.2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6.2.1 도입배경 및 법적근거

- 정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외이사들의 견제를 유도하는 한편, 공시를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시장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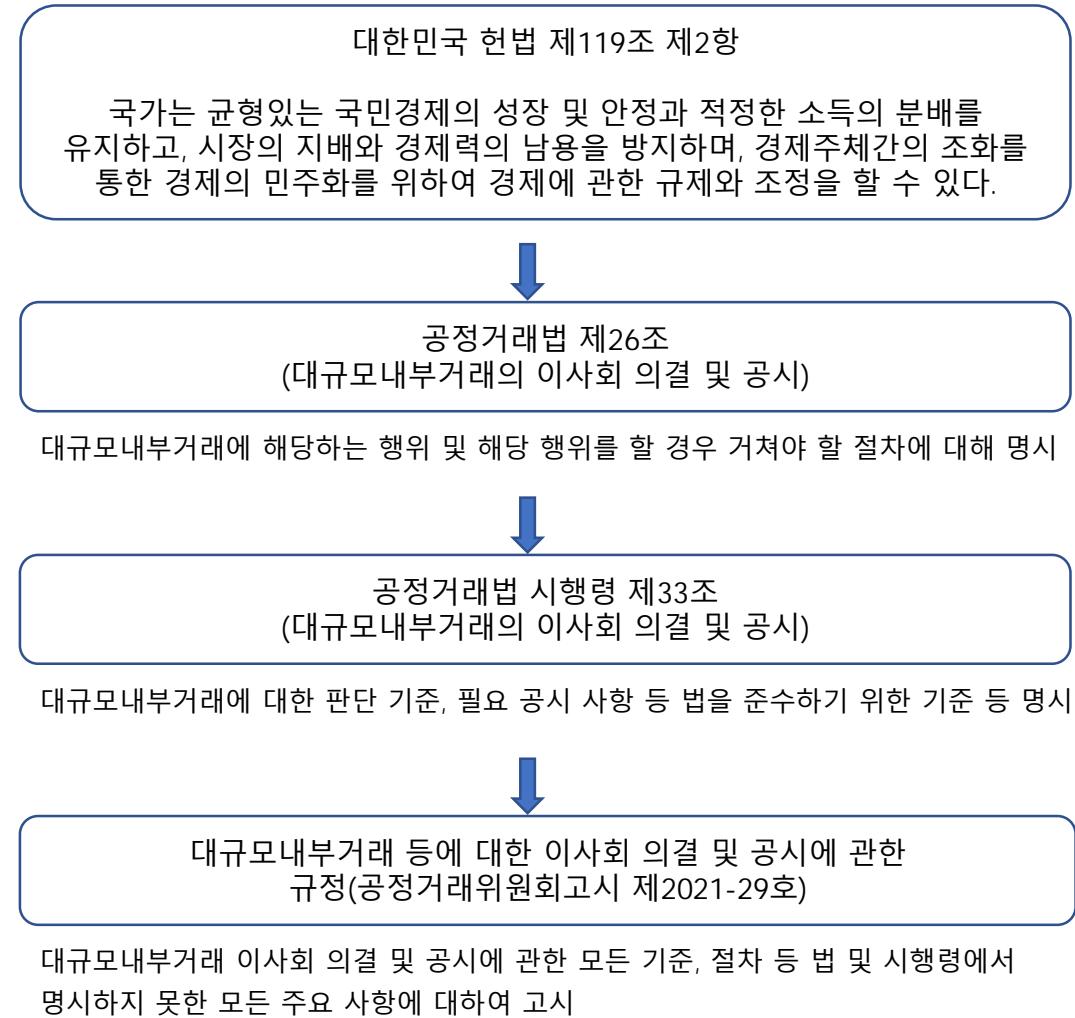
① 제도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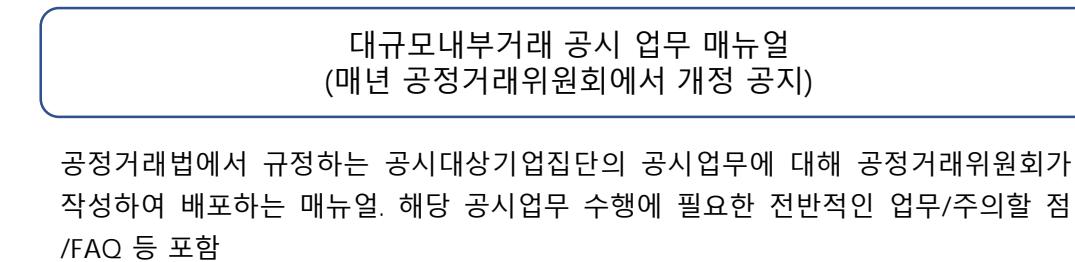
☑️ 특수관계인의 범위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기업집단 내 비영리법인, 계열회사의登記임원,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 (단, 국외계열회사는 제외)

② 근거법령



③ 추가 참고 자료



6.2.2 공시 주체 및 대규모내부거래 판단 기준

▶ 대규모내부거래의 공시 주체

- 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속하는 모든 회사
- 공시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는 공시의무가 없고, 회사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모두 포함한다.

6.2.3 주요 거래 유형

-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필요한 내부거래의 유형은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자금거래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자금거래(예시)

자금보충확약에 따른 계열회사에서 추가로 발행한 주식을 구매하는 행위 자금의 대여 등 계열회사에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직접 자금을 대여해주는 행위

▶ 유가증권거래

-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유가증권 거래(예시)

계열회사에서 추가로 발행한 주식을 구매하는 행위 등

▶ 자산거래

-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유동자산,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자산거래(예시)

부동산 임대차거래, 브랜드 사용거래 등

▶ 상품 및 용역 거래

-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계된 경상적 거래
-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만 상품 또는 용역거래에 해당하더라도 양 당사자 모두 상품 또는 용역거래로 공시하여야 함

상품 및 용역 거래(예시)

계열회사로부터의 공사도급계약, 제품의 물류업무, 계열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 계열회사의 상품 등에 대한 광고 제작 등

6.2.4 대규모내부거래 판단 기준

▶ 공시대상 거래 규모

-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회사의 자본총계(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거래
- 자본총계(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해당 금액이 50억원보다 큰 경우 50억을 기준으로 함.
(*2024년 1월 1일부터 공시 기준 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며, 5억원 미만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됨)
※ 자본총계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에 기재된 자본총계
자본금 : 이사회 의결일 직전의 자본금

▶ 공시대상 대규모내부거래 행위 판단기준

①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

- ㉗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 ㉘ 수익증권의 경우 동일 운용사의 동일 성격 수익증권을 동일한 판매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로써 단기금융상품 등의 경우에는 1일 입금액, 기타수익증권은 1회 입금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공시대상 1건의 거래행위에 해당함

②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 ㉗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 ㉘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분기별 합산 거래액(매출, 매입 포함)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③ 거래유형별 거래금액의 산정 기준

- ㉗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 : 액면가가 아닌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함**
 - ㉙ 부동산 임대차 거래금액 : 연간 임대료 + 환산 연간임대료(보증금 x 이자율)
 - ㉚ 담보제공 : 담보한도액
 - ㉛ 퇴직연금보험의 거래금액 :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는 회사의 회계연도 동안의 보험료 납입금액의 누적액을 거래금액으로 산정
- 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 ㉙ 분기에 이루어질 매출과 매입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

대규모 내부거래로 보지 않는 경우(예시)

- ㉙ 공시대상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 채권, 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 상품 또는 용역 및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할부 금융이나 카드결제
- ㉚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 주식을 계열증권사를 통해 장내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단, 장 종료 후 거래는 공시대상)
 - 자산운용사와 계열증권사간 수익증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2.5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계열회사간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 의결일 기준으로 1일 이내(비상장사는 7일 이내)에 공시 하여야 함**

▶ 이사회 의결에 관한 기준

-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래 이전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함

☑ 상법 제391조(이사회 의결방법)

1. 이사회 의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2.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통해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공정거래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사외이사 세명 이상 포함, 그 수가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로 한정)에서 의결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

▶ 공시 방법(시기, 절차, 주요내용 등)

① 공시의 기한

- ㉗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비상장사는 7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 ㉘ 공시해야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함

② 공시의 절차

- ㉗ DART(대한민국 전자공시시스템) 시스템에 등록된 양식에 따라 DART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③ 공시의 주요내용

- ㉗ 공시 대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거래조건, 거래방식 등 아래 각 중요사항에 대하여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함
 - ㉙ 거래의 목적
 - ㉚ 거래 대상
 - ㉛ 거래 상대방
 - ㉜ 계약체결 방식 (수의계약, 경쟁입찰 등)
 - ㉝ 거래의 금액 및 조건
 - ㉞ 거래 기간
 - ㉟ 거래 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 거래잔액 등
 - ㊱ 기타 거래에 관한 주요내용 등

④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공시여부

㉗ 계약서 상 자동 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 계약 연장이 되기 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필요

※사유 : 계약서 상 자동연장 조항은 조건일 뿐, 거래기간의 계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㉘ 계약서 상 자동 연장조항이 없는 경우

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 없음. (단,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지극히 제한적이므로 적절한 검토 필요)

㉒ 위에서 명시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기간 방치하여 사실상 계약연장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필요

6.2.6 이미 공시한 주요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주요내용 변경

- 기 공시된 대규모내부거래의 경우, 거래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변경 공시를 하여야 함
- 일방의 이사회 의결에 의한 자금, 자산 거래의 취소의 경우 거래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을 면제하고 거래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 공시 필요
※ 자금, 자산 거래의 취소 : 100% 금액의 변경

▶ 변경사유에 따른 절차

① 거래 금액 및 조건의 변경

㉗ 거래금액, 거래단가, 약정이자율 등이 당초보다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변경 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변경공시 하여야 함

②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의 변경

㉗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전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변경 공시를 진행하여야 함

㉘ 거래상대방 변경의 경우, 상호변경, 영업양수도, 합병 등으로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공시만 필요

③ 기타 중요사항의 변경

㉗ 계약기간 등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변경공시를 진행하여야 함

6.2.7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특례

▶ 특례의 도입 배경

- 기업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거래 및 제공하는 상품·용역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 시켜주기 위함

▶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시기에 대한 특례

① 1년 거래 기간 일괄 의결

㉗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대해 1년 이내의 거래 기간을 정해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할 수 있음

② 분기 전 사전 미예측 거래 발생 시

㉗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기 중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할 수 있음

③ 분기 중 신규 계열편입이 된 회사와의 대규모내부거래

㉗ 계열편입일로부터 분기 종료일까지 상품·용역의 거래가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분기 중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함

▶ 이미 공시한 주요내용의 변경에 대한 특례

① 거래금액이 20% 이상 감소된 경우

㉗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금액보다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할 수 있음

※ 단,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 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기 중에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 공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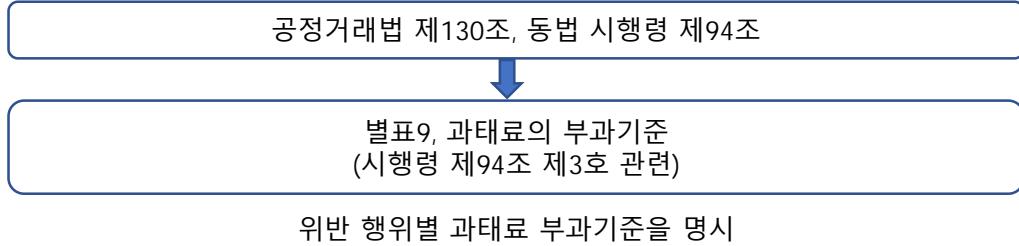
▶ 계약체결방식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의 경우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 (분기 중 거래가 예상되는 계약건별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승인이 필요한 것)
- 이사회 의결 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기 중 거래가 예상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거래대상, 금액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면 됨

6.2.8 위반시 제재

-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30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시행령 별표9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함

▶ 근거법령



▶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 (단위: 만원)
이사회 의결 여부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5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2,000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5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5,000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0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7,000

Q&A

Q1.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계약(거래)시점 및 공시 기한의 상관관계

- ▶ 이사회 의결 - 공시 :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일(비상장사 7일)이내 공시해야 함
- ▶ 이사회 의결 - 계약(거래) : 거래 전 이사회 의결받아야 함. 단, 계약(거래) 사후 이사회 의결은 이사회 승인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됨.
- ▶ 공시 - 계약(거래) : 상기와 같이 이사회 의결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지며, 공시와 계약(거래)의 상관관계는 없음.

Q2. 계열편입 이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여부

A1. 공정위 공시 의무는 계열편입 통지시점부터 발생하며, 계열편입 이전 대규모 내부 거래는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 거래시점 이미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시 의무가 있음.

예시) '23.03.17 계열회사 A 설립 → '23.04.14 계열편입(계열회사 A)신고 → '23.04.17 계열회사 A 유상증자(계열회사 B의 기준금액 이상 출자) → '23.05.02 계열회사 A의 계열편입 통지

√ 계열회사 A : A사는 '23.05.02부터 공시의무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공시의무 없음

√ 계열회사 B : B사는 유상증자 참여시 이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있음
↳ '23.04월 A사의 유상증자 참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공시 필요

Q3.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공시 여부

▶ 기업집단 내 비영리법인(대림문화재단, 대림수암장학문화재단, 대림학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있음

▶ 비영리법인에 기준금액 이상 기부하는 경우, 자금거래에 해당하므로 공시 필요

6.3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6.3.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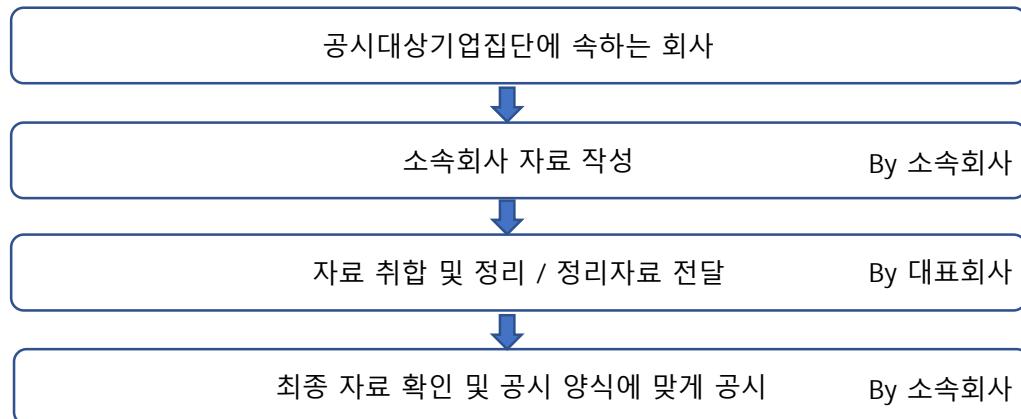
▶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란?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등 분기별, 연1회 각각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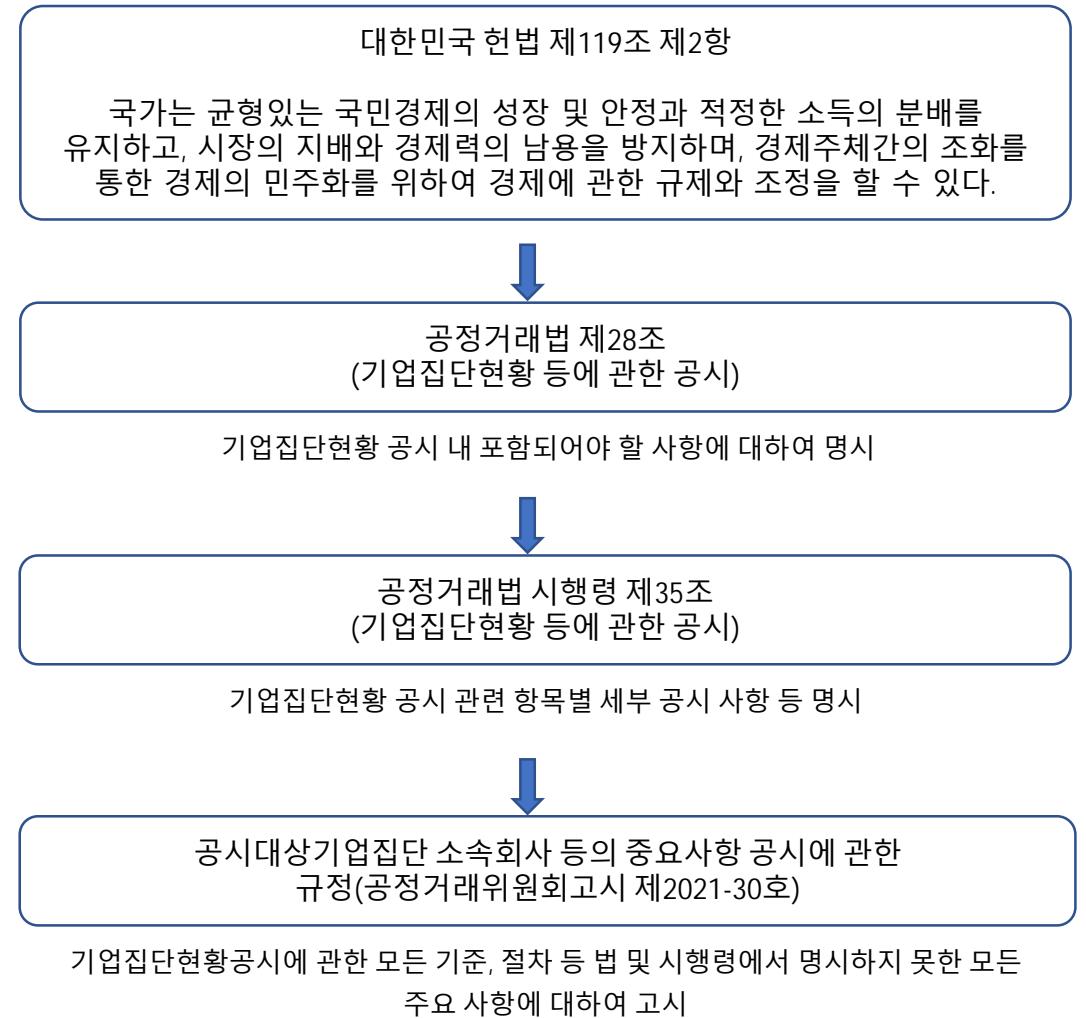
▶ 도입배경 및 법적근거

-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거래현황 등의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이해관계인에 의한 시장 감시장치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기업 스스로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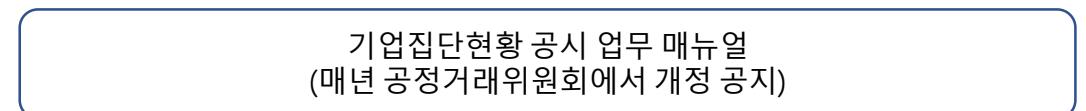
① 제도의 개요



② 근거법령



③ 추가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업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여 배포하는 매뉴얼. 해당 공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주의할 점/FAQ 등 포함

6.3.2 공시 주체

▶ 기업집단현황공시의 공시 주체

- 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속하는 모든 회사
-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6.3.3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내용

▶ 일반현황 (연1회)

- 회사의 개요 등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작성
 - ① 회사 개요
 - ② 회사 재무현황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 ③ 회사 손익현황(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 ④ 국외 계열회사 현황
 - ⑤ 계열회사 변동 현황

▶ 임원,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연1회)

- 임원,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대하여 작성
 - ① 임원현황 (임원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등)
 - ②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 주주총회 관련제도, 소수주주권 등의 운영현황
 - ※ 임원 : 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재되어있는 임원, 즉 등기임원만을 말함

▶ 주식소유현황 (연1회)

- 소유지분, 계열회사간 주식소유 등 당해회사의 지분구성과 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작성 (단, 보유중인 국외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은 제외)
 - ① 소유지분현황
 - ② 국내 계열회사간 주식소유 현황

▶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항목별 시기 참조)

- 당해회사와 계열회사, 계열회사 이외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현황에 대하여 작성
 - ①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연1회)
 - ②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연1회)
 - ③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연1회)
 - ④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연1회)
 - ⑤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연1회) 및 거래내역 (분기별)
 - ⑥ 계열회사간 물류 IT서비스 거래 현황 (연1회)
 - ⑦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거래 현황 (연1회)
 - ⑧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현황 (연1회)
 - ⑨ 계열회사간 기타자산 거래 현황 (연1회)
 - ⑩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연1회)
 - ⑪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기타자산 거래 현황 (연1회)
 - ⑫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 잔액 현황 (연1회)
 - ⑬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분기별)
 - ⑭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연1회)
 - ⑮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연1회)
 - ⑯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과 내부거래 현황 (연1회)

▶ 순환출자 현황 (항목별 시기 참조)

- 순환출자 변동내역 등 국내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현황에 대하여 작성. 단,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명시
 - ①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현황 (연1회)
 - ② 국내 계열회사간 순환출자 변동내역 (분기별)

▶ 지주회사 현황 (연1회)

-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국내계열회사 및 그 주주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
 -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 계열회사 현황

▶ 금융, 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분기별)

-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
 - 금융, 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현황

6.3.3 공시 방법 및 절차

▶ 공시 방법

- DART(대한민국 전자공시시스템) 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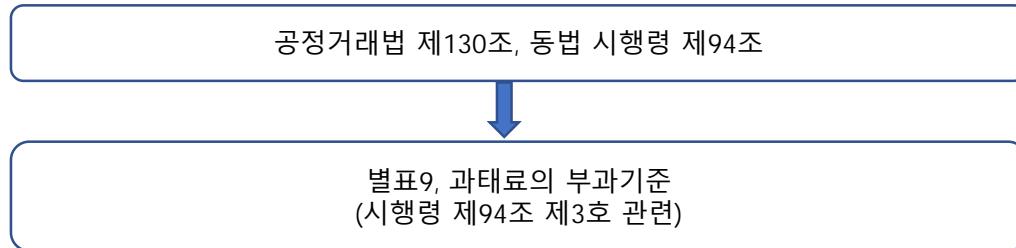
▶ 공시 절차 (당사 기준)

- ① 공시시기 도래 전 공시 초안 자료 작성
- ② 공시 기한 도래 전 IR팀과 협의하여 초안 수정 (기업집단현황공시의 경우, 공시기한 15일 전 대표회사에 검토 요청하여 검토의견 접수 후 반영 공시)
- ③ 검토 완료 후 최종 공시자료 작성
- ④ 기한 내 DART 내 공시

6.3.4 위반시 제재

-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30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시행령 별표9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함

① 근거법령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

② 기업집단현황공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 (단위: 만원)
공시 여부	공시 기한 준수 여부	주요 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공시하지 않은 경우			1,0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500
	공시 기한을 넘긴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1,000

Q&A

Q1. 특수관계인간 거래현황 중 당사가 거래한 모든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A1. 각 항목별 공시주체가 상이하므로, 공시 매뉴얼을 항목별 확인 필요함

예시) 공시대상 기간 중 계열회사 A가 계열회사 B에게 100억원 자금대여한 경우 계열회사 B에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공시의무 있음.

Q2. 계열제외된 회사와의 거래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A2. 공시대상 기간 중 계열제외된 회사와 거래가 있었다면, 해당사항 공시 필요함

예시) '23.01월 계열회사 A가 계열회사 B에게 타법인 주식을 100억원 매도하였고 '23.03월 B사가 계열제외된 경우, 계열회사 A에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공시의무 있음.

6.4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6.4.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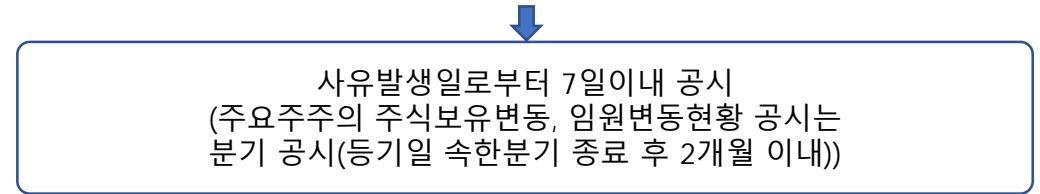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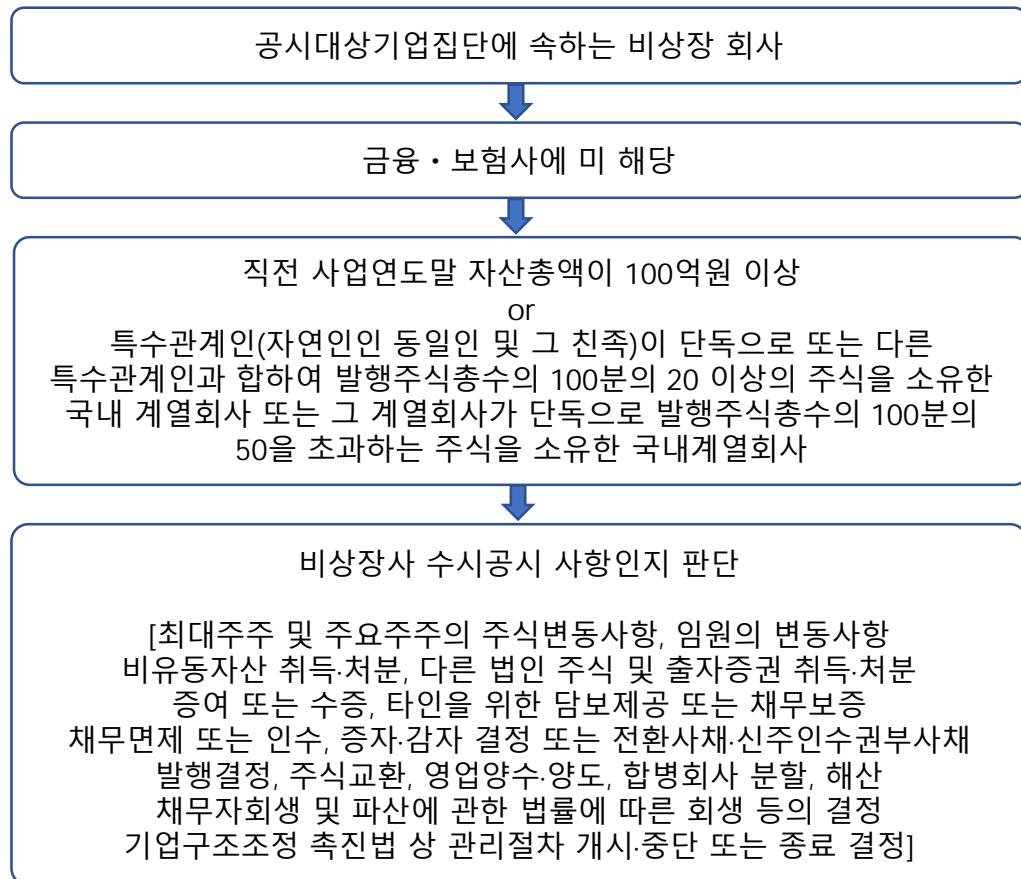
▶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란?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에 대해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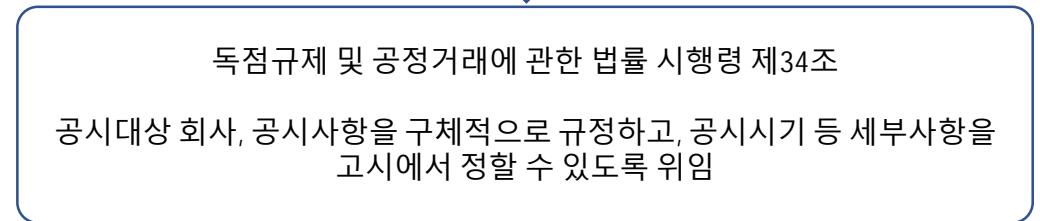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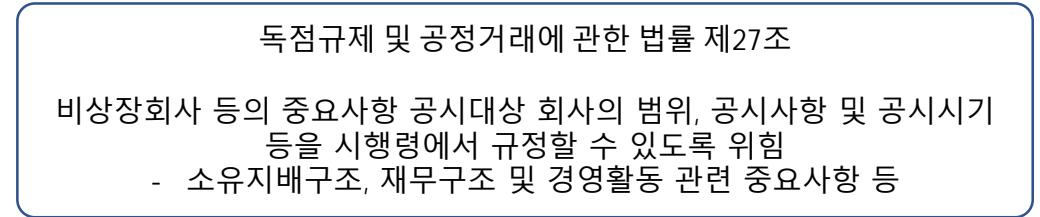
▶ 도입배경 및 법적근거

- 비상장회사는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주주고지의무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공시의무가 없음
-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상장회사는 일반 독립 비상장회사와는 달리 기업집단 내 다른 상장 회사와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 있어 비상장회사의 불투명한 경영행태가 동일집단 상장회사의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들로 하여금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시장 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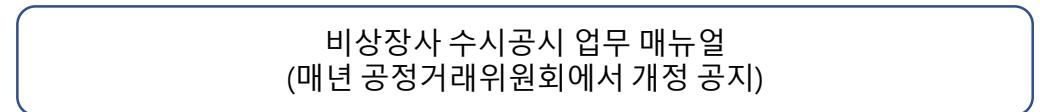
① 제도의 개요



② 근거법령



③ 추가 참고 자료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업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여 배포하는 매뉴얼. 해당 공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주의할 점/FAQ 등 포함

6.4.2 공시 주체

- 매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속하는 비상장 회사
-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①일반 소속회사 또는 ②특수관계인 회사(50% 초과 자회사 포함) 중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6.4.3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내용

▶ 소유지배구조

-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 현황
 - ①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 ② 주요주주의 주식보유 변동
 - ③ 임원의 변동

▶ 재무구조

-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① 비유동자산 취득 결정
 - ② 비유동자산 처분 결정
 - ③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 ④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
 - ⑤ 증여결정
 - ⑥ 수증
 - ⑦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결정
 - ⑧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 ⑨ 타인에 대한 채무면제 결정
 - ⑩ 채무인수 결정
 - ⑪ 타인에 의한 당사의 채무면제
 - ⑫ 유상증자 결정
 - ⑬ 무상증자 결정
 - ⑭ 유무상증자 결정
 - ⑮ 감자결정
 - ⑯ 전환사채 발행 결정
 - ⑰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 경영활동

-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① 영업양도 결정
 - ② 영업양수 결정
 - ③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등 결정
 - ④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등의 계약 변경·해지 결정
 - ⑤ 회사합병 결정
 - ⑥ 회사분할 결정
 - ⑦ 회사분할합병 결정
 - ⑧ 주식교환·이전 결정
 - ⑨ 해산사유 발생
 - ⑩ 회생절차 개시결정
 - ⑪ 회생절차 종결결정
 - ⑫ 회생절차 폐지결정

- ⑬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⑭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중단
- ⑮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종료

6.4.4 공시의 방법 및 절차

▶ 공시 방법

- DART(대한민국 전자공시시스템) 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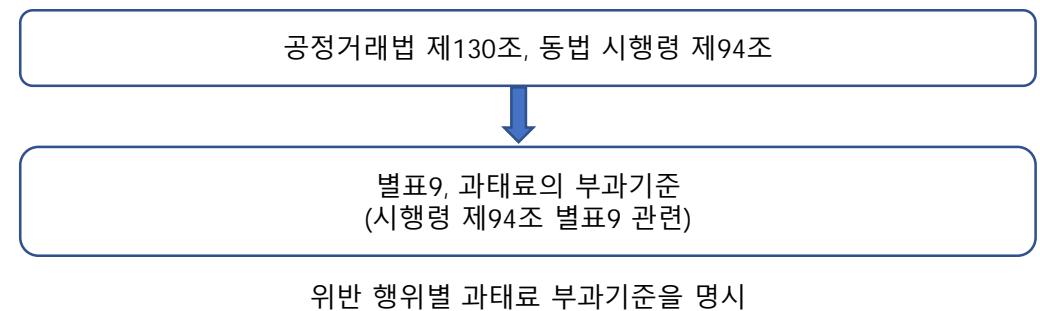
▶ 공시 절차

- 공시 사유 발생 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검토
- 공시 사유 발생 시 공시(안) 자료 작성
-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DART 내 공시

6.4.5 위반시 절차

-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30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시행령 별표9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함

① 근거법령



②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공시 여부	공시 기한 준수 여부	주요 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공시하지 않은 경우			1,0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 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 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 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 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 산하되,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500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 함한다)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 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 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 산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1,000

Q&A

Q1. 연도 중 비상장사 공시 면제 대상 변동 여부

A1. 비상장사 공시면제 기준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이므로 연도 중 자본금 변동에 따라 면제대상 변동 없음

예시)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80억원으로 비상장사 공시 면제이나, 당해 연도 30억원 유상증자 하더라도 공시면제대상 유지

Q2. 당초 공시 내용 20%이상 변동 시, 정정공시여부

A2. 공정위는 당초 공시내용 중 변동이 큰 경우, 정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정정 공시하도록 권고함. 만약 변동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재의결 했다면 정정공시 필요함. '비상장사 중요사항 등의 공시'는 정정공시 의무 없지만, 공시 당시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사회 의결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6.5 하도급 결제조건 공시

6.5.1 개요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란?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시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
- (제조·건설 등 위탁) 제조·수리·건설·용역 관련, 원사업자가 자기 업에 따른*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 (예) 자동차 제조업체가 건설공사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경우는 하도급거래가 아님

▶ 도입배경 및 법적근거

-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하여 원사업자에 비해 취약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아, 2차 이하 협력사로 갈수록 결제조건이 대체로 더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

6.5.2 공시 의무사항

-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함.

▶ 지급수단에 관한 사항

- (지급수단) ①현금(수표) ②상생결제 ③어음대체결제수단 ④어음 등 하도급 대금 지급수단 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금액을 기재
 -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도 공시
 - 매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작성
- ① 상생결제 :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
- ㉞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수탁기업에게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 ㉟ 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 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 ㊱ 금융기관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 ㊲ 외상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도래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전용예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상환할 것

- ② 현금결제비율 :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수표·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10일 이내인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
- ③ 현금성결제비율 : 전체 하도급대금 현금·수표·만기 60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
- ④ 어음대체결제수단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수단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지급기간에 관한 사항

제조 등의 위탁의 경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건설 위탁의 경우	인수일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용역 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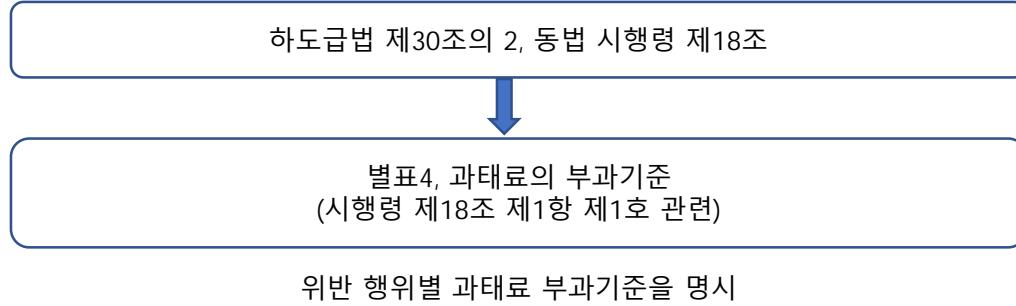
-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제기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①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설치여부 ②담당부서 및 연락처 ③분쟁조정 절차 ④예상 소요기간 등을 공시
- 단, 실질적 분쟁예방·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매부서 등 계약담당 부서 내에 설치한 경우 의견청취·조정 조직 등은 명칭을 불문하고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않음

6.5.3 공시 빈도 및 시기

- 매년 2회 반기 말 (6.30, 12.31)로부터 45일 이내 공시

6.5.4 위반 시 제재

① 근거법령



②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주요내용의 누락이나 거짓 공시 여부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200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100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한 경우	250